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업무 해설

홍 중 민

우리협회 전문위원(서울지부장)

건설안전기술사

1.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개요

1) 목적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업무의 목적은, 중소 건설현장의 건설재해가 전체 건설재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는 중소규모의 작업장수가 대형건설 사업장 수보다 많은 점도 있겠으나 대부분 사업규모가 적은 사업장으로 시공조직과 안전조직 등의 체계를 갖출 수 없는 영세 사업장으로서의 이유가 더욱 클 것으로 보아 이러한 현장의 건설재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고자 함에 있다.

2)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 등)

①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 및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안전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공사의 진척별 사용기준
2. 건설공사의 규모별·종류별 사용방법 및 내역
3. 기타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당해 표준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표준안전관리비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따라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가 표준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지정·지정의 취소 및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 3(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안전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공사진척에 따른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 기준
2. 건설공사의 규모별·종류별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및 내역
3. 기타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

② 노동부장관은 표준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중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외의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에 관하여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인력·시설기준 또는 수수료 기타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③ 영 제26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은 건설업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별표 18의 규정에 의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정·지도감독, 수수료 기타 안전관리비 사용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 및 동시행령 제26조의 3 제2항에 의하여 공사비 100억 미만의 공사는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지도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노동부 고시 제94-45호(1994. 10. 21) 및 노동부고시 제95-5호, 6호((1995. 2. 23)에 의거, 세부업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3) 노동부고시 중 관련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안전관리비의 사용)

① 도급인인 사업주가 건설공사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금액에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의 범위안에서 수급인에게 공사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표준안전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하거나 도급인인 사업주의 책임하에 수급인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인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사를 위하여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를 건설현장 소속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1) 기술지도대상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4-45호) 제2조(정의) 제1항 3, 4에서 “전담기술지도”와 “정기기술지도”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안전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라 함은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

성준칙”(재무부 회계예규) 별표 2의 공사원가 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3. “전담기술지도”라 함은 영 제26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외의 사업의 사업주에게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이 안전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전담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4. “정기기술지도”라 함은 영 제26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외(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의 사업주에게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이 안전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위의 “전담기술지도”에서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외의 사업이란 공사비 20억 미만의 공사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즉 공사비 20억 미만의 공사를 하는 사업주는 “전담기술지도”를 받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전담기술지도 대상사업장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경우는 정기기술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다(제13조 제3항).

제12조(기술지도) 제1항에 의하면 전담기술지도는 월1회 이상 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정기기술지도는 매3월에 1회 이상, 즉 기술지도계약 일로부터 매3월에 1회 이상 기술지도를 실시하여야 하며, 기술지도대상 공사 중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와 공사비가 4천만원 이상이라도 공사기간(계약공기)이 3개월 미만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주도 및 연육교가 설치된 지역외의 도서지방에서 실

시되는 공사 또한 기술지도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제12조(기술지도)

① 전담기술지도는 월1회 이상, 정기기술지도는 매3월에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당해 공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술지도 또는 정기기술지도를 실시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제13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사금액이 4,0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2. 공사기간이 3월 미만인 건설공사
3. 전국 도서지방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제주도 및 연육교가 설치된 지역 제외)
4. 기타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건설공사(건설업자인 사업주가 공사계약시 고시내용을 제시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술지도 또는 정기기술지도는 공사종류에 따라 순수건설공사, 전기 및 전기통신공사 제외), 전기·전기통신공사로 구분한다.

(2) 지도 계약 및 벌칙

기술지도대상 사업장은 공사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과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술지도 계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종료시에는 기술지도 완료 증명을 발주자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발주자와 시행자가 같은 경우, 즉 자기 공사자는 발주처에 제출하는 대신 계약서를 현장에 비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의 벌칙은, 전담 기술지도를 받지 않은 사업장은 안전관리비의 40퍼센트를 지급하지 않으며 정기기술지도를 받지 않을 경우는 안전관리비의 30%를 지불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은 벌칙이

상기한 안전관리비 40%와 30% 삭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의 위반사항이 되므로 과태료 300만원까지 책임을 지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제13조(기술지도 계약)

①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과 기술지도에 관한 계약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체결하고, 기술지도 계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종료시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지도완료 증명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자기공사자는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과 기술지도에 관한 계약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체결하고 그 증빙서류를 공사 현장내 적정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전담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정기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수급인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안전관리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전담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는 안전관리비의 40퍼센트
2. 정기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는 안전관리비의 30퍼센트

⑤ 제4항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명기하여야 한다.

(3) 기술지도 범위 및 준수 의무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은 기술지도 범위로서 안전관리비 집행에 대한 지도를 하여야 하며 법·영·규칙·기술상의 지침 등에 의거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지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관리비 집행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개선 권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개선권고사항은 사업주가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2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 및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은 당해 사업장의 범위 위반사항을 확인한 후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조치토록 하고 있으며, 특별한 개선 권고사항이 없는 경우는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제출하고 있다.

제14조(기술지도의 범위 및 준수 의무)

①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를 함에 있어서는 해당 사업주에게 안전관리비 집행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개선을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 권고시에는 법, 영, 규칙,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법 제27조의 기술상의 지침 및 영 제26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 표준안전시방서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술지도 또는 정기기술지도를 받은 사업주는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의 권고사항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관할지방노동관서장은 당해 사업장의 범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집무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4) 기술지도 수수료

기술지도 수수료는 노동부 고시 95-6에 의하여 다음 표와 같이 정하고 있다.

기술지도 수수료 기준

기술지도구분	수 수 료
정기기술지도	안전관리비 총액의 10% 이하
전담기술지도	안전관리비 총액의 15% 이하

※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는 5% 이내의 범위에서 증가시킬 수 있음

(5) 부칙(참고)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은 1995년 3월 1일 이후 계약된 공사에 한하여 시행한다.

2.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업무

우리 협회와 기술지도업무 계약이 체결되면 전담기술지도는 공사착공 후 1월이 경과하기 전에 최초 지도업무가 실시되며 정기기술지도는 공사착공 후 2월이 경과하기 전에 최초 지도업무가 실시된다.

중점 지도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추락·낙하·붕괴·감전 등의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 2) 위험 기계 기구의 방호조치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 3) 건설기계에 의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 4)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및 개인보호구의 선택·취급·착용에 관한 사항

5) 갱내 또는 밀폐공간 작업시의 작업환경 측정·환기·배기시설의 적정성 검토

6)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직의 설치 및 운영 직종간, 작업간 작업동선 교차에 따른 위험분석 및 대책에 관한 사항

7) 표준안전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에 관한 사항

8) 무재해운동에 관한 사항

9)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서 이행하여야 할 사항

이상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실시하며 이에 따른 매 사업장마다 사업장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다.

사업장에서는 지도업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기술지도기관에서 안전교육을 하고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 사업장이 많은데 위에서 기술한 것처럼 법과 규정을 지키도록 지도하는 입장에 있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3. 기술지도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지금까지 우리 협회에서 약 1,000여 개소 사업장을 지도한 결과, 공통점을 몇가지 발견할 수가 있었다.

1)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다.

각 사업장의 책임자는 물론 경영주 자체도 인식을 못할 뿐더러 자기 자신이 법규와 규정을 위반하는 것조차 인식을 못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2) 기술인력의 부족

공사비 5억 이하는 사실상 기술 인력구성 자체가 이루어지기 곤란한 영세 현장으로서 시공상의 문제점이나 안전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 자체가 곤란한 지경에 있는 실정이다.

3) 제규정의 적용상 문제

공사비 5억 이하의 현장은 대부분 인력 구성이 직원 1인 또는 2인이 직접 작업을 지휘하고 있는 실정으로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사용내역 정리, 안전교육,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과 시간적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4) 하도급상의 문제

사업장 분위기, 작업상의 여건 등으로 보아 대부분 1식 하도급식으로 실제 운영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대부분의 현장에서 느낄 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가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몇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는 현장이 대부분이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관리상, 기술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제도상의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사보 쪽지>

‘쉽’의 의미를 찾자

한국미술품 5천년전이나 미주 여러 도시에서 꽤 장기간 성황리에 열렸을 때, 그 전시회가 끝나갈 무렵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어떤 잡지의 인터뷰에서 미주의 전시를 보고 프랑스, 영국 등 유럽쪽에서도 보여달라는 요청이 많았지만 물건도, 거기에 달린 사람도 함께 쉬어야 한다고 사양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또 茶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가 아끼는 茶器를 오랫동안 사용하노라면 그 그릇이 좀 쉬고 싶어하는 내색을 이내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한다. 그 때는 다른 그릇으로 바꾸어 쉬게 해야 한다고 한다.

우리는 기계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자기가 지닌 특성과 기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부지런히 일해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우리네는 너나 할 것 없이 너무도 바쁘다. 요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고 인사를 하면 심중 팔구는 바빠서 숨 쉴 틈도 없다라든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 지경이라고 한다.

심지어 직원들의 전화내용을 들어보면 오랜만에 전화를 하고도 안부인사를 하기 보다는 바빠 죽겠으니 서로 이해하고 용건만 간단히 말하자고 한다.

또는 주말에 가족과 함께 보내거나 자연을 품에 안고 여유를 즐기기도 하는 회사에 어느때와 다름없이 출근하여 하루종일 일과 씨름하다가 파김치가 되어 어두운 밤길을 터벅터벅 걸어 집으로 들어간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누군들 쉬고 싶지 않으리만 처지와 형편이 그렇지 못하니 쉬지도 놀지도 못하는 것이 아니냐고. 그러나 열심히 일하고 쉰다는 것은 게으름과는 다른 것으로서 자기의 일을 발전시키고, 재생산 재창조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사회, 좁게는 회사는 우리에게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요구하며 창조적인 일을 바라지만, 우리나라의 또는 우리 회사의 문화는 독창적이기보다는 남의 것을 모방하고 추종하는 경향이 짙다. 이것은 머리를 식히면서 조용히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새롭고 바람직한 것이 창조될 터인데 그렇지 못하고 일에만 쫓기다보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저 그런 것들이 쏟아져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열심히 일한 뒤에 쉴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다.

-「현대건설」 '93. 11월호에서-